

## ● 과학기술부령 제정

###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1. 제정이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原子力法, 1999. 2. 8, 법률 제5820호) 및 동법시행령(1999. 8. 31, 대통령령 제1654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방사선(放射線)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技術基準)을 별도의 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사선의 이용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이용과 관련한 국제규범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핵연료물질(核燃料物質)의 사용시설 보관시설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핵물질의 사용 분배등에 관한 취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와 핵물질의 취급시 기술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함(안 제4조 내지 제15조)

나.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 및 방사선발생장치(放射線發生裝置)의 사용시설 분배시설등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사용 분배 등에 관한 취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의료분야(醫療分野)에 대하여는 동 분야의 특성에 맞는 취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환자 및 의료분야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함(안 제16조 내지 제48조)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移動使用)과 판매(販賣)시 방사선에 의하여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이동사용자 및 판매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함(안 제49조 내지 제57조)

라.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放射性廢棄物廢棄施設)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분장,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8조 내지 제68조)

마. 과학기술부고시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성능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의 성능기준과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이 부령에서 규정하여 다른 기술기준과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폐기시설의 안전성과 관련한 주요장치들에 대하여는 보다 진보된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폐기시설이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안전을 도모함(안 제69조 내지 제82조)

## ● 과학기술부령 제정

###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1. 제정이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原子力法, 1999. 2. 8, 법률 제5820호) 및 동법시행령(1999. 8. 31, 대통령령 제1654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원자로시설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별도의 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기술변화 및 국제규범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원자력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원자로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57조)

나. 과학기술부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기준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품질보증기준을 이 부령에서 규정하여 다른 기술기준과의 통일을 기하고 그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내지 제76조 및 제87조)

다. 원자력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내지 제86조)

※ 상기 규칙의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문속의 RI뉴스

### 무공해 · 무한 에너지 핵융합발전

석유는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현상등 부작용이 크다.

그래도 요즘처럼 국제유가가 춤을 추면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피곤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석유가 곧 고갈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이다. 원유는 2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바닥날 것이 확실하다.

대체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은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성폐기물들로 인해 '화장실 없는 저택'에 비유된다. 따라서 무공해이면서도 쉽게 고갈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